

부천시서울·인천간고속도로연변오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11월 15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7년 11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40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2007년 12월 1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도시계획과장 우의제)

가. 제안이유

- 우리 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관련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동 조례 폐지”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서울·인천간고속도로변오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제191호
의결 년월일	2007. 12. 21 (제140회)

제출년월일 : 2007. 11. 14.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제안이유

- 우리 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관련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동 조례 폐지”

- ## 첨 부 : 부천시서울·인천간고속도로변오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부천시서울·인천간고속도로연변오정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부천시서울·인천간고속도로연변오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
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조례]

부천시서울·인천간고속도로연변오정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

제정 1973. 07. 01 조례 제41호

제1조(목적) 서울·인천간고속도로연변오정지구의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특별회계는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부담금, 체비지 매각대금, 일반회계 전입금, 국고보조금 기타 수입을 그 세입으로 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제3조(잉여금) 이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이를 타 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제4조(수지독립의 원칙)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입의 부족이 생긴 때에는 차입금 또는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보전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